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39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최혁진 · 김우영 · 이성윤
정혜경 · 윤종오 · 박지원
한창민 · 김재원 · 권칠승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 · 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을 규율하는 장치도 미비함. 또한, 선임계 제출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은 전관 영향력 행사의 주요 통로임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사실상 규율 공백 상태에 있음.

이에 최고위 법조인에 대한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사명 강화(안 제1조)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공직 퇴임 변호사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함.

나. 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신설(안 제30조의2)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다. 수임 제한 기간 및 범위 강화(안 제31조제3항, 제5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제3항), 재직 중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함(제5항).

라. 위반 변호사 고용 및 공동 수임 금지(안 제31조제6항)

영구 수임 금지 조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법무법인 단위의 규제 회피를 차단함.

마. 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안 제31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가 재직 중 소속 기관의 공직자에게 사건 관련 청탁·알선을 하거나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몰래 변론'을 차단함.

바. 벌칙 신설 (안 제113조)

위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1. 대법원장, 대법관
2.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3. 검찰총장

제31조제3항 본문 중 “1년부터”를 “2년부터”로, “1년 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에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⑥ 변호사는 제5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 변호사와 공

동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 ① 변호사는 공직 퇴임 전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사건의 수임이나 처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거나 사건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관사실·검사실 방문, 전화 변론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자
9.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10. 제31조제6항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의2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생략)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u>노력하여야 한다.</u>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노력</u> <u>하여야 하며, 특히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30조의2(특정 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u> <u>1. 대법원장, 대법관</u> <u>2. 헌법재판소장, 법재판관</u> <u>3. 검찰총장</u>
제31조(수임제한) ① ~ ② (생략)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	제31조(수임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신설>

---2년부터---

-----2년 동안-----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에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변

<신 설>

⑤ (생 략)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⑥ 변호사는 제5항을 위반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그 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1조의2(비공식 접촉 및 선임계 미제출 변론 금지) ① 변호사는 공직 퇴임 전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공직자에게 사건의 수임이나 처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하거나 사건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선임계 미제출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판사실·검사실 방문, 전화 변론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u> <u>건을 수입한 자</u> <u>9.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u> <u>10. 제31조제6항을 위반한 자</u> <u>11. 제31조의2제1항, 제2항을</u> <u>위반한 자</u>
--	--